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비대면 투자일임 약관

_____ (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퀸텟투자자문(이하 “회사”라 한다.)는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및 금융투자상품 투자자금(이하 “투자일임재산”이라 한다.)운용에 대해 고객이 회사로부터 계약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받는데 관하여 다음과 같이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계약의 목적)

- ① 이 약관은 고객과 회사 간의 로보어드바이저 퇴직연금 적립금 관련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이하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계약” 또는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이 약관은 투자일임재산의 매매거래시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별 약관 등과 함께 적용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조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퇴직연금감독규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 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 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고객”이라 함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가입자 중 회사와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관계인수인”이란 회사와 같은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한 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3. “계좌”라 함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해 고객이 회사에 개설한 계정으로 투자일임업무를 위해 종합자산관리계좌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
4. “온라인 채널”이란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로서 휴대폰 등 고객의 개인 단말장치에서 실행되는 회사의 모바일 앱, 모바일 웹, 홈페이지 및 기타 업무를 제휴한 다른 회사의 고객용 소프트웨어에 회사가 제공한 구성요소 등을 말한다.

5. “최소투자금액”이란 로보어드바이저별로 투자일임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투자일임 재산을 말한다.
6. “로보어드바이저”라 함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된 알고리즘과 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포트폴리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6호에서의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말한다.
7.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서비스”라 함은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하여 제공되는 투자일임서비스를 의미한다.
8. ‘모델 포트폴리오’란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운용되는 투자대상 자산 및 투자비중 등의 자산배분 내역을 말한다.
9.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이란 고객이 회사로부터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고객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한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회사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0. “알고리즘”이란 로보어드바이저의 운용 전략, 포트폴리오 구성 및 리밸런싱 등의 운용 방식을 말한다.
11. “투자일임”이란 고객으로부터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고객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12. “투자일임재산”이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은 자산 및 해당 자산의 운용 등으로 형성된 자산(현금포함)으로서 근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근퇴법령”이라 한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 상의 적립금 운용대상이 되는 자산을 말한다.
13. “투자자산운용사”라 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금융투자 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아 투자일임재산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4. “이해관계인”이란 회사의 임직원, 대주주, 계열회사 등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15. “퇴직연금 적립금”이라 함은 근퇴법령에 의해 고객이 납입하거나 고객을 위해 납입된 부담금 및 당해 부담금의 운용으로 형성된 자산(현금 포함)을 말한다.

제2장 투자일임 수행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3조(투자대상)

① 회사가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그 투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한다.

1.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규정된 증권

2.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규정된 파생상품
3. 자본시장법 제234조의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이하 "ETF"라 한다)
4. 그 밖의 고객과 회사가 사전 합의한 금융투자상품

제4조(투자일임의 범위 및 내용)

① 고객은 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임하고 회사는 고객을 위하여 투자를 실행한다.

1. 투자일임재산의 투자전략 수립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2. 투자일임재산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투자상품의 가치판단에 대한 사항
4. 투자대상의 종류, 종목, 수량, 가격에 대한 사항
5. 투자대상의 매매의 구분, 방법 및 시기에 대한 사항
6.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부수업무

②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에 따른 투자일임재산의 운용
2.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결과에 대한 보고
3.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전략에 대한 보고
4. 그 밖의 투자일임재산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계약체결 및 계약기간)

① 고객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에서 정한 최소계약금액 이상의 자산을 현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은 고객이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로보어드바이저를 선택하고 본 계약체결에 동의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로보어드바이저를 결합하는 상품의 경우 본 계약을 체결에 동의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퇴직연금(IRP) 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수 있다.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2.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최소 1개월 이전까지 고객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계약종료일 이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같은 기간 및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다만, 가입 당시 연장 반대를 표시하였을 경우에는 자동 연장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같은 기간 및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가입 당시 연장 반대를 표시하였을 경우 또는 회사가 제5항 각호에 따른 사유로 계약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장되지 않고 운용을 종료한다.

⑤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계약의 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9조의 지정기간 만료 등으로 로보어드바이저 퇴직연금 적립금 관련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2. <별지>의 유형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의 한계 등으로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별지>의 유형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금융시장의 변동 등에 따라 고객의 투자일임재산 보호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회사가 신규판매 및 계약연장을 종료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상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제6조(계약의 적용범위)

① 이 약관에 따른 일임계약은 고객이 계좌별로 추가 납입한 원금 범위 내에서 연간 900만 원까지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추가 납입한 원금이란 퇴직급여 이전 금액을 제외한 고객이 추가로 임의 납입한 원금 잔액으로 중도인출 시 인출된 납입원금 차감 후 잔액을 말한다.

③ 제1항의 900만 원은 연간 한도로 매년 900만 원까지 납입 가능 원금이 증가되며 동일 계좌에 복수 일임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전체 계약 원금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동의 하에 퇴직급여 이전금액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회사는 동의 절차 진행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객에게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

1.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의 장기 성과가 검증되지 않은 점
2. 퇴직급여 적립금은 과거 근로소득에 대한 급여 보전 성격이 있어 고객이 임의 납입한 금액만을 운용할 것을 권고한다는 점
3. 고객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가입자 임의 납입금액과 퇴직급여 적립금 구분 없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

제7조(회사의 금지행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고객으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고객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고객에 대한 제3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단,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심사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여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단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 나. 차익거래 등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6.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단,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매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 등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를 형성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그 특정증권 등을 매매하는 행위
8. 특정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9.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10.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단, 다음 각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가.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채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인 경우
 - 나. 증권시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인 경우
 - 다.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일임재산에 유리한 경우
11. 고객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12.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고객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고객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단, 개별 고객일임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3. 고객으로부터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위임받는 행위
 - 가.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나.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 다.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단, 주식매수권의 행사, 공개매수에 대한 응모, 유상증자의 청약, 전환권의 행사, 파생결합증권의 권리 행사 등은 예외로 한다.
14. 투자일임계약(비대면)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15. 투자일임의 범위,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16.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제공받는 행위
 17.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투자운용인력을 교체하는 행위
 18.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내역 및 자산의 평가내역에 대한 고객의 조회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19. 그 밖에 관련 법령 등에서 매입이 금지된 금융투자상품을 매수하거나 투자한도를 준수하여 운용 시지 하지 않는 행위

제8조(투자일임방법 등)

- ① 회사는 고객에게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선호의 정도 및 투자예정기간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고객의 의사를 투자일임재산 운용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에게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회신해 줄 것을 통지한다.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변경된 내용을 회신 받은 경우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은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상담 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은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등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투자자와 상담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자가 상담일로부터 2주 전에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경우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도 운용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다.
- ⑤ 고객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정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서면 또는 유선 등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정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의 특별한 사유란 회사가 고객의 요구에 따르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회사가 정상적인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1.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자동화 된 운용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2. 로보어드바이저가 통과한 코스콤 테스트베드 운용심사의 통과 조건을 위배하게 되는 경우
3. 기타 기술적 제한, 법령상의 제한, 또는 본 약관을 포함한 계약상의 제한을 벗어나게 되는 경우

제9조(퇴직급여 지급 등을 위한 자산의 인출 등)

- ① 고객계좌에서의 인출은 퇴직급여 지급 등 근퇴법령 및 관련 약관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한 고객의 신청에 의하여 운용관리기관의 지시에 따라 자산관리기관이 인출하여 고객에게 지급한다.
- ② 제1항의 인출사유 발생시 고객은 매도하려는 자산의 결제일 및 인출시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은 고객계좌에서 투자일임재산의 인출을 회사에 위탁할 수 없다.

제10조(손익의 귀속)

회사에 대한 투자일임은 시장상황의 예측, 목표수익률의 달성, 투자성과 및 원금보전 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일임 결과 발생하는 손익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11조(투자일임수수료)

① 회사는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서비스에 따른 수수료를 관련법규의 범위 내에서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일임서비스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를 각각 또는 병행하여 회사에게 지급한다. 단, 고객과 회사는 수수료 지급의 시기, 주기, 기준지표, 기준수익률, 수수료율,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의 비율 등을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기본수수료: 고객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매년 1년이 되는 경우(이하 “운용만기”라 한다) 또는 계약해지 시 해당 운용기간 동안의 일평균잔액에 비례하는 연간 기본수수료를 지급한다. 단, 운용만기의 경우 운용만기일의 투자일임재산 평가액을 익일부터 시작되는 운용기간의 투자원금으로 본다.
2. 성과수수료: 고객은 각 로보어드바이저별 운용만기·계약해지 시 투자일임재산의 매도대금 입금일(매도가 불가능한 경우 운용성과를 확정할 수 있는 날을 말한다) 각 로보어드바이저 운용성과에 연동하여 사전에 자본시장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준지표 또는 투자자와 합의에 의하여 정한 성과수수료를 지급한다. 복수의 로보어드바이저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복수의 로보어드바이저의 총 운용성과로 판단한다. 단, 운용성과가 기준지표 또는 고객과 합의한 기준

수익률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부(음수)의 수익률이거나 성과수수료로 인하여 운용성과가 부(음수)의 수익률이 되는 경우 고객은 성과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이 어떠한 이유로든 해지되거나 운용이 종료되는 경우 회사는 투자일임재산의 매도대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에 대하여 제1항 제1호에 따라 선취한 기본수수료를 일할하여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고객은 제1항 제2호에 의한 성과수수료를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수수료 외에 중도해지 수수료 혹은 부분해지 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 일임계좌에 부과되는 매매수수료 등 투자일임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할 의미가 발생하는 수수료, 보수, 세금은 고객이 부담한다.

⑤ 고객의 수수료 지급은 그 사유 발생시 투자일임재산 중 수수료 해당 금액을 투자일임재산에서 제외하고, 회사가 이를 출금이체하거나 또는 제휴사 요청에 따라 고객이 별도로 지정한 계좌를 통해서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별도 출금이체하여 수취한다.

⑥ 수수료 출금이체 시점에 일임계좌 혹은 별도 수수료 계좌 내 현금 잔액이 부족하여 수수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5영업일 내에 일임계좌 혹은 별도 수수료 계좌에 납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고객은 위 기한 내에 해당 계좌에 납부하거나 또는 고객 명의 투자일임 대상 계좌 내 재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사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회사는 수수료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수수료 출금이체를 재시도 할 수 있다.

⑦ 회사와 고객이 합의로 정한 수수료 산정방식은 가입 전략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가입 시 선택한 산정방식은 만기 연장에 따라 연 1회 변경할 수 있다. 단, 변경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다.

제3장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

제12조(자산의 소유권)

① 고객계좌 내 투자일임재산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및 그 밖의 권리행사를 위임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는 위임받을 수 있다.

1.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2. 공개매수의 응모
3. 유상증자의 청약
4. 전환사채의 전환권의 행사
5.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
6. 교환사채의 교환청구

7. 파생결합증권의 권리의 행사
 8.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
-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관계법규 등에서 금지된 권리의 행사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투자일임보고서 교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일임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고객에게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1. 운용경과의 개요 및 손익
2. 투자일임재산의 매매일자, 매매가격, 위탁수수료 및 각종 세금 등 운용현황
3.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현황,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손익
4. 투자일임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및 금액
5. 로보어드바이저 및 유지·보수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성과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기준지표의 성과와 성과보수 지급내역
7. 자본시장법 및 관계 법령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8. 그 밖의 관계법령상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회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교부한 투자일임보고서가 3회 이상 반송된 경우 고객이 요구할 때 즉시 교부할 수 있도록 지점이나 그 밖의 영업소에 투자일임보고서를 비치하는 것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투자일임담당자의 선정과 변경)

① 회사는 고객에 대한 투자일임재산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투자일임담당자를 선임한다.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일임담당자의 제재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고객이 투자일임담당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전자)서면 또는 전화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고객의 투자일임담당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담당자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전자)서면 또는 전화 등 증빙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일임담당자의 사망·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일임담당자의 변경 후 지체 없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회사는 제4항 단서에 따라 투자일임담당자를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시에는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일임담당자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

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투자일임담당자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고객이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일임담당자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⑦ 고객은 제4항의 단서에 의한 투자일임담당자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투자일임담당자 변경을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유지 의무)

① 고객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 내용과 관리현황, 신상내용 및 그 밖의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이는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도 효력을 갖는다.

③ 회사는 투자일임서비스에 필요한 경우 일임계좌의 개설 금융회사에 거래내역 등 일임계좌의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다.

제16조(정보 변경시의 통지)

①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일임권 또는 대리권의 범위 및 그 밖의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정보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고객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지체 없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회사와 계약해지를 협의하도록 하며, 회사는 상속인과의 협의 내용 및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제17조(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실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고객지시에 따른 운용으로 인한 손실
2. 서류 및 인감(또는 서명감) 등을 알맞은 주의로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도용,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18조(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회사는 천재지변,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와 지연되는 경우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계약의 해지)

① 고객은 모바일 등을 통하여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각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전자금융거래 장애 시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하여 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의 수수료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수수료 지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2. 일임계좌에 가압류나 압류 절차 등과 같은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되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투자일 임재산의 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3. 고객이 제9조 제2항에 따른 확인에 연 4회이상 회신하지 아니하고, 제9조 제3항에 따른 회신도 하지 않는 경우
4. 고객이 실명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제3자를 위하여 투자일임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5. 고객이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투자일임계좌에서 지분증권을 취득·처분하거나, 타 계좌로의 이전, 타 계좌로부터의 이전 또는 현금의 출금(계좌이체 포함) 등을 하여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 경우, 고객이 가입한 모든 전략이 해지된다.
6. 고객이 본 약관 또는 기타 회사와 체결한 약정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고, 위반의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③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9조의 지정기간 만료 등으로 본 계약의 이행이 현행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투자일임서비스는 회사의 투자일임업 폐지 등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정도의 명백한 경영상의 이유, 관련 법령이나 규제의 변화, 금융감독당국의 지도 등에 따라 종료될 수 있다.

⑤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면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계약의 해지는 그 이유와 관계 없이 해지 이전에 계약에 의하여 실행된 거래와 제공된 투자일임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하여야 할 수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수수료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20조(운용 개시·종료 시의 재산형태)

① 고객은 투자일임재산을 현금의 형태로 일임계좌에 입금하고, 운용만기·해지 등으로 운용 종료 시 고객의 선택에 따라 회사는 투자일임재산을 전부 매도하여 현금의 형태로 복원하거나 기존 운용자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단, 고객과 회사가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투자일임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융투자상품(공정한 시세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형태로 하여 운용을 개시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② 운용 종료 사유 발생 시 투자일임재산에 거래정지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증권거래소에서 매도할 수 없는 금융투자상품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고객으로 하여금 선택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해당 금융투자상품이 매도 불가능한 상태 그대로 회사의 운용을 종료하고, 증권거래소에서 확인되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최종 종가를 기준으로 투자일임재산을 평가하여 성과수수료를 계산·지급하는 방법.
2.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도 불가능 사유가 해제되면 회사가 매도하고, 회수한 매도대가를 기준으로 투자일임재산을 평가하여 성과수수료를 계산·지급하는 방법. 단, 상장폐지 등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는 확정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를 0(영)으로 계산하여 투자일임재산을 평가하고 성과수수료를 계산·지급한다.

제21조(투자일임재산의 평가)

① 제22조의 금융투자상품의 평가는 로보어드바이저 운용 시작시에는 당일, 투자일임계약 종료 시에는 종료일, 계약 만기 연장시에는 원 계약만기일을 기준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에 의한 재산 종류별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2. 위 1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고객과 회사가 별도 합의할 수 있다.

② 고객의 해외금융투자상품 투자시 매수, 매도 및 주문 취소 과정에서 환율 변동에 따라 원화로 표시한 투자일임재산의 가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계약체결 시 및 계약종료 시 투자일임재산의 최종 평가는 원화로 한다.

제22조(운용성과의 평가)

- ① 운용성과는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운용시작일 또는 직전 계약만기일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운용 종료의 경우 투자일임재산 매도대금 입금일의 평가액, 그 외의 경우 평가일 현재 평가액의 증감액으로 한다. 평가액의 계산은 제22조의 기준일 및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 ② 주식의 경우 배당, 유무상 증자에 의한 배당락이나 권리락이 이루어졌으나 배당이나 증자분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일 혹은 해지일 종가 기준으로 배당 또는 유무상 증자분을 평가에 포함한다.

제23조(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약관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또는 전자우편, SMS 등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 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네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 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고객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본문에서 정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7조(관계법규 등의 준수)

-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 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27조(관계법규 등의 준수)

고객에 대한 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회사의 통지가 연착하거나 도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통 도착하여야 하는 때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의 해지 및 이에 준하는 중요한 의사 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본다.

고객과 회사는 위의 각 조항을 확인하고 계약에 동의한다.

본 계약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작성 및 고객에게 제공한다. 투자일임대상 계좌의 개설 이후 본 계약의 내용을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본 계약의 체결에 동의하면 계약이 체결되며, 고객의 전자우편주소로 본 계약서가 자동 발송된다. 계약기간 중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언제든지 본 계약서의 발송을 재 요청할 수 있다.

교과서

[고객] 성명 : (서명)

[회사] 상호 : 주식회사 퀸텟투자자문
사업자등록번호 : 188-87-02634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 (여의도동) 13층
대표이사 : 송성환 (인)

[별지 1]

I. 상세계약정보

성명	:
생년월일	:
계좌개설금융기관	:
계좌번호	:
계좌유형	:
고객통지이메일	:
계약상품명	:
계약체결일	:
계약기간	<p>계약체결일로부터 1년</p> <p>*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은 대상 계좌에 최소운용금액이 입금된 시점부터 개시함</p>
투자일임재산	<p>투자일임서비스가 제공되는 재산</p> <p>1) 금융투자상품별 최소운용 금액</p> <p>* 우리자산x퀀팅ROBO 글로벌 자산배분 EMP_P : 50만 원 * 우리자산x퀀팅ROBO 글로벌 자산배분 FOF_P : 10만 원</p> <p>2) 계약갱신시의 투자일임재산은 계약기간 종료일의 평가금액에서 투자일임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함.</p>
투자일임수수료	<p>수수료: 운용 수수료, 성과 수수료 中 택1</p> <p>1) 운용 수수료: 투자일임재산에 대해 연 0.50%</p> <p>2) 성과 수수료 : 투자 성과에 대해 연 10%</p> <p>* 성과 수수료는 기준수익률(0%) 초과 수익금에 고객과 합의한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합니다.</p> <p>* 성과 수수료는 만료일 혹은 해지일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평가금액이 투자금액보다 더 높을 때만 수익금 정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p> <p>3) 중도해지수수료 : 없음</p>
수수료 지급 시기 및 방법	<p>1) 수수료 지급 시기</p> <p>*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 10영업일 이내 * 계약해지 신청일 이후 10영업일 이내</p> <p>2) 수수료 지급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심이체의 출금동의'에 의하여 회사가 투자일임계좌에서 징수하며, 고객이 회사의 계좌 등에 별도로 입금할 필요 없음 * 단, 고객계좌에서 투자일임수수료 지급을 위한 현금이 부족한 경우 회사는 즉시 고객에게 애플리케이션이나 전자우편등을 통해 고객에게 안내하고, 고객은 고객계좌에 수수료 납부를 위한 현금을 추가 입금하여야 함
	<p>추심이체 출금 동의 관련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의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는 본 계약의 필수 요건으로서 고객이 계약기간 중 해당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회사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고객의 계약해지로 인한 수수료 수취를 완료한 경우 회사는 고객의 '추심이체 출금 동의'를 철회 처리함.
기타 참고사항	<p>운용 성과 관련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 성과는 투자일임재산의 순자산 증가분으로 합니다. 순자산 증가분은 고객이 회사의 로보어드바이저에게 투자일임을 한 원화 금액과 계약 종료에 따라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은 금액을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하여 운용한 투자일임 재산을 정리하여 고객의 계좌에 입금하여 정산한 원화 금액 또는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아 로보어드바이저로 운용하고 있는 기준일의 투자일임재산 원가 환산 평가액을 비교하여 확정합니다. 투자일임재산의 순자산 증가분은 고객이 회사의 로보어드바이저를 선택하여 투자일임 한 금액과 회사가 로보어드바이저 운용을 통하여 발생한 기간의 운용성과 만을 의미합니다. * 운용 성과에는 계약 종료 시 회사가 실현한 손익뿐만 아니라, 고객이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투자일임계좌에서 지분증권을 취득·처분하거나, 타 계좌로의 이전, 타 계좌로부터의 이전, 현금의 출금(계좌 자체 포함) 등을 통해 실현된 손익도 포함됩니다. * 회사가 투자일임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계약 종료로 인하여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운용 중인 투자일임재산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고 투자일임계좌에 입금하여 정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해외 금융투자상품은 각 상품의 통상적인 매도 과정에서 적용되는 환율을 적용함).

II. 로보어드바이저의 기본정보

□ 투자일임재산 운용에 활용된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명	출시일	회차	통과 여부
우리자산x퀀트ROBO 글로벌 자산배분 EMP_P	2023.12.11	22차	○
우리자산x퀀트ROBO 글로벌 자산배분 FOF_P	2023.12.11	22차	○